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에 관한 규정 등을 도입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교통환경 개선에 기여
- 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용자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에 한시적 부담금 감면 규정을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안 제3조)
- 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2조)
- 다.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8조)
- 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시적 경감의 적용(안 제6조 및 안 부칙 제2조)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상·하수도시설(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3. 우·배수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4.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
5. 송·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
6. 가압장·환풍시설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5조(부담금 경감비율 등) ①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의 산식을 적용하되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다만, 승용차 2·5·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제6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5조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① 제4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아 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말일 기준으로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감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요일제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행: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입·진출하게 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출입을 하는 경우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5. 통근버스를 오전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감면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하며 향후 1년 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신청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지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담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시의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2021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시적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규정은 2020년 7월 31일을 부과 기준일로 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2조, 제5조 관련)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 10부제 및 기준과 병행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용차 2부제	○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일에 홀수이면 홀수일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에 승용차 진·출입 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승용차 요일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주차장 유료화	○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 ※ 다만, 기업체·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하며, 1시간 초과 후 시설물 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100분의 10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100분의 20
통근버스 운영	○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25% 이상(총좌석 수/총 종사자수)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제공 ※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아·유아 보육·교육 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시차 출근제	○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 ※ 통근버스를 오전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9시 정상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출근시간조정 등)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종사자의 50%이상에게 매월 5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제공(단, 현금지급은 제외)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 매월 2일 이내 100분의 5 ○ 매월 3일 이상 100분의 10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승용차 2·5·10부제,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음

$$\text{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times (1-b) \times (1-c)] \times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시설 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m ²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명
	연락처	사무실 FAX 핸드폰			종사자이용 승용차	대
부 담 금 경 감	감축방안이행		최대 경감 (%)	경감 신청 (%)	세부사항	
	계					
	승용차 부제운행	10부제	10		시행방법 :	
		5부제	20		시행방법 :	
		2부제	30		시행방법 :	
		요일제	20		시행방법 :	
	주차장유료화		20		시간당 원 / 월 원	
	통근버스운영		10		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시차출근제		10		출근시간 : / 참여인원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20		지급액 : 1명당 월 원(총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10		휴무일 :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시설 개요	시 설 명				건축총면적	m ²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명
	연 락 처	사무실 FAX 핸드폰			종사자이용 승 용 차	대
부 담 금 경 감	감 축 방 안 이 행		최대 경감 (%)	경감 신청 (%)	세부사항	
	계					
	승 용 차 부제운행	1 0 부 제	10		시행방법 :	
		5 부 제	20		시행방법 :	
		2 부 제	30		시행방법 :	
		요 일 제	20		시행방법 :	
	주 차 장 유 료 화		20		시간당 원 / 월 원	
	통 근 버 스 운 영		10		승차정원 명 / 운행대수 대	
	시 차 출 근 제		10		출근시간 : / 참여인원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20		지급액 : 1명당 월 원(총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10		휴무일 :		
이 행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 개요	시 설 명				건축총면적	m ²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명
	연 락 처	사무실 FAX			종사자이용 승 용 차	대
	핸드폰					
부 담 금 경 감	감 축 방 안 이 행		최대 경감 (%)		경감 신청 (%)	비 고
	계					
	승 용 차 부 제 운 행	1 0 부 제		10		
		5 부 제		20		
		2 부 제		30		
		요 일 제		20		
	주 차 장 유 료 화		20			
	통 근 버 스 운 영		10			
	시 차 출 근 제		1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2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10				
이 행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지서						
시설 개요	시 설 명				건축총면적	m ²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명
	연 락 처	사무실 FAX			종사자이용 승 용 차	대
	핸드폰					
부 담 금 경 감	감 축 방 안 이 행		최대 경감 (%)	경감 신청 (%)	결정 사항 (%)	비 고
	계					
	승 용 차 부 제 운 행	1 0 부 제	10			
		5 부 제	20			
		2 부 제	30			
		요 일 제	20			
	주 차 장 유 료 화		20			
	통 근 버 스 운 영		10			
	시 차 출 근 제		1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20			
의 무 휴 업 또는 자 율 휴 무		10				
이 행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 ○○○ 귀하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10. 생략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⑨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18. 생략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생략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 5. 생략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세입 감소
(안 제5조, 안 별표1)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을 '20. 7. 31.을
부과기준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함에 따른 세입 감소
(안 제6조, 안 부칙 제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으로 정확한
비용 산정이 어려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시적 경감에 따른 세입 감소액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734,311	514,017	800,000	810,000	820,000	830,000	840,000

※ 교통사업 세입재원 감소(2020년 514백만원)로 2021년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 소요(240백만원)

4. 작성자

교통정책과 행정8급 정대용 (☎480-6255)

소 관 부 서		교통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박 말 기
	담 당	전 정 희
	담 당 자	정 대 용 (480-6255)